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5823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 선고 2017구합5125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368,939,4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6행의 "규정한 것 뿐"을 "규정한 것일 뿐"으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지방세 통폐합 당시 등록세의 일부가 취득세에 통합되면서, 종래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이었던 형식적 취득에 대하여 종전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감면 규정이 아닌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점,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 자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의 중복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세의 '중복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면허세를 각각 별도의 세목으로 규정하면서, 신탁재산의 취득,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및 농지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110조). 그런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 · 투명성을 높임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이 통·폐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와 관련하여서는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세율의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한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였는데, 종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는 세율의 특례를 두어 종전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였다.

(2) 위와 같은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를 통해 취득세 비과세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가 규정하는 '세액의 감면'과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세율의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 본문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중복감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가 예정하고 있는 '중복감면'에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세율의 경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의 '취득'이란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그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취득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 지방세법 제110조가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환매권의 행사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취득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환매의 경우에는 수용 등으로 상실한 종전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둔 실질적인 면제규정이라고 해석된다(이는 이 조항 표제에 '비과세'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의 비과세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취득세의 면제를 위한 특례 규정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1-08

③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세율의 특례 대상이 되는 '취득'을 열거하는 조항인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취득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과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것을 전제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